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참전명예수당 병급 허용 및 지급하한액 명시 등〉

■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169호)

2024. 8.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3
1. 참전명예수당 병급 허용	3
2.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1인 가구 최저생계비로 명시	8
3.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승계	12
4. 참전유공자 유가족 진료비 감면	16
5. 참전유공자 수송시설 이용지원	20
※ 참고자료	25

I. 제안경위

1. 제안자 : 구자근의원 등 10인
2. 제안일 : 2024. 6. 5.
3. 회부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는 전체 국가유공자 중 저소득층이 많고 점차 고령화됨에 따라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해당할 경우 보상금 및 수당의 병급을 금지하고 있어 참전유공자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 병급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와 동일하게 하고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할인하는 한편, 참전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되도록 하며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도 의료지원을 제공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가. 병급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참전유공자가 다른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과 함께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단서 삭제).

나.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로 정함(안 제6조제7항).

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되도록 함(안 제6조의2제1항).

라.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도 의료지원을 확대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참전유공자에 대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참전명예수당 병급 허용

☐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해당할 경우 보상금 및 수당의 병급을 허용하여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단서 삭제).

현행	개정안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국가보훈처장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u>다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당지급 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참전명예수당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u>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 ----- ----- ----- -----. <u><단서 삭제></u> <u><삭 제></u>

제4호·제6호·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③ (생략)

④ 참전명예수당은 수당지급 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삭 제>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④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당지급 대상자”라 한다)이-----

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해당 수당지급 대상자의 신 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 ----- ----- ----- -----.
⑤ ~ ⑥ (생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 현행 보훈보상체계에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은 한 개인이
동일 사건(참전, 군복무)으로 인해 보상금 및 여러 수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참전을 포함한 군 복무’를 ‘하나’의 원인으로
보아 보상금과 여러 수당 중 하나를 택일토록 하고 있음.

○ 동일 사건으로 전쟁이나 전투에 참여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공헌의 정도를 인정받아 훈장을 받은 사람 또는 일반참전자
신분으로 전쟁이나 전투에 참여한 사람 등에 대해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상이보상금,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등으로 지급하면서 각각의 보상금의 병급을 금지하고 있음.¹⁾

1) 동일 사건이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보상금 등의 병급 허용(독립유공자 자녀이면서 참전유공자인 경우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과 참전명예수당 동시에 수급)

<동일 사건(참전)에 따른 보상 유형>

(단위: 천 원)

요건 대상 구분	부상 등	훈장	고엽제피해		참전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 의증 환자	참전군인
보상종류	보상금	무공영예수당	보상금	고엽제후유 의증수당	참전명예수당
요건기준	상이등급 (1~7급)	무공훈장 (인헌~태극)	상이등급 (1~7등급)	장애등급 (경도~고도)	참전
지급액	608 ~ 3,681	480 ~ 500	608 ~ 3,681	568 ~ 1,175	420

※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어 7급 이상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전상군경으로 보상

자료 : 국가보훈부

☐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을 보상금 및 무공영예수당, 고엽제후유의증수당과 병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보훈부가 2021년 실시한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참전유공자의 연간 평균 개인 소득은 2,149만원으로 보훈대상자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²⁾ 생활고에 시달린 참전유공자의 사례가 언론에 보도³⁾되는 등 참전유공자의 열악한 생활 실태와 함께 국가가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합당한 예우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참전유공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2)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p.164.

3) 동아일보, “마트서 반찬 훔친 노인, 6·25 참전용사였다...‘생활 어려워서’”, 2023.06.23.

□ 다만, 참전명예수당과 보상금, 무공영예수당, 고엽제수당 등을 병급할 경우 상당한 국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참전과 관련된 수당을 모두 병급하여 지급하게 되면 연간 3,942억원, 5년간 1조 9,709억원의 예산이 필요(참전명예수당은 현행 42만원 기준)할 것으로 추산⁴⁾되므로, 재원조달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전명예수당 병급 허용 시 향후 5년간 소요예산
(현행 참전명예수당 단가 적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병급 유형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경합자	1. 참전명예수당+보상금(명)	55,385	50,123	45,361	41,052	37,152
	2. 참전명예수당+고엽제수당(명)	31,219	28,253	25,569	23,140	20,942
	3. 참전명예수당+무공영예수당(명)	7,944	7,189	6,506	5,888	5,329
소요예산	A 병급인원(1+2+3)	94,548	85,565	77,436	70,080	63,423
	B 추가소요 단가(천원)	420	420	420	420	420
	C 추가소요 예산(백만원)	476,522	431,248	390,277	353,208	319,662

* 인원은 참전명예수당 '21~'23년 지급실적 증감률 △9.5% 적용/단가는 '24년 참전명예수당 단가 적용

** 추가소요 예산(C) = 병급인원 합계(A) × 추가소요 단가(B) × 12개월

자료 : 국가보훈부

4) 개정안은 안 제6조제7항에서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른 경우 참전과 관련된 수당을 모두 병급하여 지급하게 되면 연평균 1조 2,548억원, 5년간 6조 2,74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됨(국가보훈부 추산)

□ 또한, 참전명예수당과 보상금 등의 병급이 허용될 경우, 보상금과 무공영예수당,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의 병급 요구도 제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임.

□ 한편, 개정안 제6조제1항의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1인 가구 최저생계비로 명시

□ 개정안은 신체적 희생이 없는 65세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 ⑥ (생략) ⑦ 참전명예수당은 월액(月額)으로 지급하며, <u>그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u>그 지급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로 정한다.</u>

□ 현행법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월 42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7호5)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6)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참전유공자의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 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먼저, 개정안에 따른 경우 참전명예수당이 133만 7,000원⁷⁾ 이상이 되는데, 이는 신체적 희생을 입은 상이군경에 대한 보상금(상이7급 기준 월 60만 8,000원)이나 공훈을 인정받은 무공수훈자에 대한 무공영예수당(월 48만원~50만원)보다 많아지므로, 다른 국가유공자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보훈보상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최저생계비'는 정의 규정에만 명시되어 있고, 소득인정기준으로는 '기준 중위소득'이 이를 대체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적용하고 있음.

7) 최저생계비는 채무자회생법 579조에 생계비(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기준 중위소득 60%산정)를 준용, '24년 1인 기준 중위소득(2,228천원)의 60%인 1,337천원 적용(국가보훈부)

<상이유공자 등 보상금과 참전유공자 수당 비교>

(단위: 천원)

참전명예수당		상이7급 보상금		무공영예수당
현행	개정안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420	1,337*	608	426	480~500

* 최저생계비는 채무자회생법 579조에 생계비(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기준 중위소득 60%산정)를 준용, '24년 1인 기준 중위소득(2,228천원)의 60%인 1,337천원 적용

자료 : 국가보훈부

□ 또한, 법률에서 직접 수당의 하한액을 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보훈급여금 등의 구체적인 액수는 경제상황 등 사회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산으로 편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비교적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줄 필요도 있다는 점과,⁸⁾ 개정안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향후 5년간 4조 9,485억원(연평균 9,89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련 법률 및 「기초연금법」 등 사회복지 관련 법률에서도 구체적인 지급액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추가재정소요>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① 참전유공자(명)	108,621	98,355	89,059	80,642	73,021
② 인상단가(천원)	1,337	1,337	1,337	1,337	1,337
③ 소요예산 (①×②×12, 백만원)	1,742,715	1,578,008	1,428,863	1,293,820	1,171,549
㉠ 기존단가(천원)	420	420	420	420	420
㉡ 기존단가소요예산 (①×㉠×12, 백만원)	547,450	495,709	448,857	406,436	368,026
㉢ 추가소요예산 (③-㉡, 백만원)	1,195,265	1,082,299	980,006	887,384	803,523

* 인원 : 중기재정소요 인원 반영

** 최저생계비는 채무자회생법 579조에 생계비(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기준 중위소득 60%산정)를 준용, '24년 1인 기준중위소득2,228천원 60% 1,337천원 적용

*** 기존단가 : 24년 참전명예수당 단가(42만원) 적용

자료 : 국가보훈부

☐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최저생계비’ 대신 ‘기준 중위소득’⁹⁾을 매년 고시하여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최저생계비’가 아닌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안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참전명예수당만 급격히 인상할 경우 다른 보훈대상자의 보상수준 상향 요구로 이어져 보훈급여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0. (생략)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기준 총 116,855명임.

□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수급권을 배우자가 승계할 수 있도록 하여, 유가족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임.

□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는 참전유공자 사망 시 생계가 곤란한 배우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달리 참전에 따른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본인에게 지급¹¹⁾하는 ‘일신전속적 성격’으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수당 지급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그리고,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은 직무 수행 중 ‘신체적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전몰군경, 전상군경)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¹²⁾으로, 신체적 희생이 있어도 비교적 경미한 등급인 상이

② ~ ⑥ (생략)

⑦ 참전명예수당은 월액(月額)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12) 현행 보훈보상제도는 생명·신체의 희생에 대한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이러한 희생을 입지 않았으나 공적이 있는 분들(예: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명예선양차원에서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유족이 갖는 보상수급권은 국가유공자의 신체적 희생에 따라 유가족이 제대로 부양을 받지 못하여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기 위한 것임.

7급에 대해서는 유족 보상금이 인정되지 않고 있음. 또한, 참전명예수당처럼 신체적 희생 없이 수당을 받는 무공수훈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도 배우자에게 승계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참전명예수당을 신체적 희생을 입은 국가유공자의 유족과 동일하게 승계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또한 부칙에서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를 이 법 시행 후 사망한 참전유공자부터 적용하는 경우 이전에 사망한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유족과의 형평성 문제 또한 제기될 수 있음.

□ 한편,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향후 5년간 8,26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받는 무공수훈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7급 상이자도 형평성을 이유로 배우자 승계를 요구하는 경우 재정 소요액¹³⁾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참고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13) 국가보훈부는 향후 5년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배우자(5년간 3,442억원), 7급 상이자 배우자(5년간 1,181억원), 무공수훈자 배우자(5년간 381억원) 등 총 5,00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함.

<개정안(배우자 승계)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인원 발생	① 참전유공자 인원(명)	203,169	183,920	166,495	150,722	136,444
	② 참전유공자 사망인원(명)	19,249	17,425	15,773	14,278	12,925
	③ 연도별 미망인 발생 인원(명)	13,879	12,563	11,372	10,294	9,319
소요 예산	④ 연도별 미망인 발생 인원 누계	13,879	25,317	34,639	42,128	48,035
	⑤ 단가 (‘24년 1인 기준중위소득60% 천원,)	420	420	420	420	420
	⑥ 소요예산 (④×⑤×12,백만원)	69,948	127,600	174,582	212,327	242,096

* 참전유공자 인원은 참전명예수당 '21~'23년 지급실적 증감률 △9.5% 적용, 배우자 생존율 72.1%, 배우자 사망률 8.1% 적용

** 미망인 추계 산식 = (기사망 참전배우자*사망률)+당해년도 미망인 발생인원

자료 : 국가보훈부

□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유족에게 보상금을 승계하는 취지는 ‘국가유공자의 신체적 희생으로 유가족이 제대로 부양을 받지 못하여 입은 피해를 국가가 지원하기 위함’으로 신체적 희생이 없는 참전유공자의 유족에서 수당을 승계하는 것은 현 보상체계에 부합하지 않으며, 막대한 국가 재정부담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4. 참전유공자 유가족 진료비 감면

-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유족 또는 가족도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제7조(의료지원) ① <u>참전유공자가</u>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7조(의료지원) ① <u>참전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u> ----- ----- ----- ----- ----- ----- ----- ----- ----- ----- -----.
② 국가는 75세 이상인 <u>참전유공자의</u>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② ----- <u>참전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u> ----- ----- ----- -----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등은 그 상이처 및 질병에 대한 진료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해당 대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은 본인 부담 진료비의 일부를 감면받고 있음.¹⁴⁾

□ 현재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참전유공자 본인에 한

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진료)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상이처 외에 질병에 걸려 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 및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 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 진료한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에 지급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
2.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배우자
3.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⑥ ~ ⑧ (생략)

하여 보훈·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액의 90%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⁵⁾

□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유족 또는 가족 또한 진료비용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참전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려는 긍정적인 취지이나, 다음과 같은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보훈의료 지원체계는 유공자 본인과 그 유가족에 대한 혜택에 차이를 두어 지원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 법상 신체적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등은 그 상이처 및 질병에 대한 진료비용을 국가로부터 전액 지원받고 있으며,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은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를 감면받고 있음.¹⁶⁾

1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료지원) ①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료지원)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이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법 제7조제1항·제2항 및 이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보훈병원이나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비용을 감면 받은 참전유공자의 약제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참전유공자”로 본다.

④ 참전유공자가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용 중 본인부담비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따라 참전유공자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같은 표 제1호다목에 따른 약제비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90을 감면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용을 본인부담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⑤ ~ ⑦ (생략)

16) 참고 “대상별 보훈의료 지원 범위” 참조(p.25)

□ 또한, 개정안에 따른 경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가족 등 의료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다른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 논란과 지원 확대 요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해 진료비용을 감면 해주고 이를 국가가 부담하는 경우 향후 5년간 약 3,74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개정안에 따른 유가족 의료지원비 소요예산(추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 계
보훈병원 진료비	15,082	15,428	15,840	16,319	16,870	79,539
위탁병원 진료비	55,597	57,031	58,725	60,697	62,970	295,020
합 계	70,679	72,459	74,565	77,016	79,840	374,559

※ 참전유공자 유가족의 '보훈병원' 의료지원을 현행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의료지원 조건과 동일하게 설정(배우자 및 선순위유족 1인에게 본인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참전유공자 유가족의 '위탁병원' 의료지원을 현행 국가유공자 유족 중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배우자) 1인에게 의료지원을 하는 조건과 동일하게 설정(75세 이상 수권유족(배우자)에게 본인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자료 : 국가보훈부

□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현재 위탁병원 진료대상이 아닌 국가유공자 본인¹⁷⁾ 및 유가족에게 우선 이용자격을 부여하고, 이후 참전유공자 유가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현재 지원

17)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대상 확대보다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에 대응하여 위탁병원 확충 등 의료접근성 개선을 보훈의료 분야 우선과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다양한 의료지원 요구사항과 정책 우선순위, 진료 대상 확대에 따른 국가재정 여건 등을 감안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5. 참전유공자의 수송시설 이용지원

-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에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수송 시설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10조의2(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u> <u>참전유공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u> <u>② 정부는 참전유공자에게 제1항의 수송시설 외의 수송시설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u>

□ 현행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전·공상군경 등 상이국가유공자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에 대하여 수송시설의 이용요금 감면을 지원하고 있으며,¹⁸⁾ 요금을 감면한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¹⁹⁾

<수송시설 이용지원 근거법률 및 감면대상>

근거 법률	감면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전상군경 등과 상이등급 1급 유공자의 동승보호자 1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8조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장해등급1급 부상자의 동승보호자 1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독립유공자 및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독립유공자의 동승보호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3조	특수임무부상자 및 상이등급1급부상자의 동승보호자 1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4	보훈보상대상자(지원공상 포함) 및 상이등급 1급 대상자의 동승보호자 1인

자료 : 국가보훈부

1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輸送施設)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9) 고속열차는 한국철도공사와 (주)에스알과 협약에 의해, 민영버스는 전국버스연합회와 수송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임(또는 감면)금액에 대해 일부 보조금을 지원(2023년 기준 감면액의 철도 34.8%, 버스 전액)하고 있음.

<수송시설 이용지원 대상 및 내용>

수송시설		이용지원대상자	감면률
열차(고속철 포함)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연 6회 무임 후 50% 감면
도시철도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무 임
버 스	시내버스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무 임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애국지사, 1~5급 상이자	시외버스 70% 감면, 농어촌버스 100% 감면
		6급 이하 상이자	30% 감면
	고속버스	애국지사, 1~5급 상이자	50% 감면
		6급 이하 상이자	30% 감면
내항 여객선 (연 6회/도서거주자 연 12회)		애국지사, 1~5급 상이자	무 임
		6급 이하 상이자	50% 감면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7급은 국가유공상이자 1~5급에 준하며, 8~14급은 할인대상

※ 애국지사, 1급 상이자는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자료 : 국가보훈부

□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에게 수송시설 이용요금을 할인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송시설 이용료를 감면한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취지임.

□ 다만, 수송시설의 이용 지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는 과정에서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인 바, 상이가 없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확대는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하고 있지 않은 무공·보국수훈자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참전유공자의 평균연령은 6·25전쟁 참전자 89세, 월남전 참전자 74세로, 현재 「노인복지법」상 철도 및 도시철도 이용요금 우대²⁰⁾를 이미 받고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수송시설 이용요금을 할인하고, 감면한 자에게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향후 5년간 약 22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20)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 할인은 새마을호·무궁화호는 30%, 도시철도는 100%(무임)등 임.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하 "경로우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할인을 별표 1과 같다.

■ 노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제19조제1항관련)

시설의 종류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철도	
가. 새마을호, 무궁화호	100분의 30
나. 통근열차	100분의 50
다. 수도권전철	100분의 100
2. 도시철도(도시철도 구간안의 국유전기철도를 포함한다)	100분의 100

<개정안에 따른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 소요예산(추정)>

(단위: 명, 억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 계
참전유공자 인원	133,568	121,303	109,913	99,338	89,505	553,627
소요예산	12,067	10,959	9,930	8,974	8,086	50,016

※ 예상추가 재정소요 : (참전유공자수/현재 대상자*)×이용지원 예산**

* 현재 수송시설 이용지원 대상자('23년 12월 말 기준) : 118,761명

** '24년 수송시설 이용지원 예산 10,729백만원

자료 : 국가보훈부

□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다른 대상자와의 형평성 및 국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이등급이 없는 참전유공자를 수송시설 이용지원 대상자로 포함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국토교통부는 법 개정 시 할인대상자가 2배가 넘어 증가되는 할인분을 국가재정에서 지원해야하므로 국고 부담이 가중되고, 도시철도는 지자체 시설로 지자체와 추가협의를 필요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107

참고

대상자별 보훈의료 지원 범위

【 국비진료 대상 】

근거 법률	적용 대상자	지원 범위(보훈·위탁병원)
독립유공자법 제17조	▶ 애국지사	▶ 모든 질병 국비지원
국가유공자법 제42조, 제73조, 제74조	▶ 전상군경, 공상군경 (지원공상군경 포함) ▶ 4·19혁명 부상자 ▶ 공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포함) ▶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 6·18자유상이자	▶ 상이처 및 일반 질병(부상 포함) 국비 지원 ※ '12.7.1. 이후 등록 신청하여 7급 판정을 받은 상이자는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 부담
제73조의2	▶ 상이등급기준 미달자	▶ 상이처와 그로 인한 합병증 국비 지원
보훈보상자법 제51조	▶ 재해부상군경 ▶ 재해부상공무원	▶ 상이처 및 일반 질병(부상 포함) 국비 지원
제51조의2	▶ 상이등급기준 미달자	▶ 상이처와 그로 인한 합병증 국비 지원
5·18민주유공자법 제34조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상이처 및 일반 질병(부상 포함) 국비 지원 ※ '16.6.23. 이후 등록 신청하여 12~14등급을 받은 자는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 부담
특수임무유공자법 제33조	▶ 특수임무부상자	▶ 상이처 및 일반 질병(부상 포함) 국비 지원 ※ '16.6.23. 이후 등록 신청하여 7급 판정을 받은 상이자는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 부담
고엽제법 제7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판정자) ▶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장애등급 판정자)	▶ 부상을 포함한 모든 질병 국비 지원 ※ '16.6.23. 이후 등록 신청하여 경도 판정을 받은 자는 인정질병 외 질환 10% 본인 부담 ▶ 진료 제외 질병 -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 - 타인에 의한 위해 - 유전(2세환자 제외) - 군 복무 전 발생한 것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기준 미달자) ▶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등급기준 미달자)	▶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2세 인정 질병 및 그로 인한 합병증 국비 지원
제대군인법 제20조 제1항	▶ 상이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전·공상, 재해부상 제대군인	▶ 상이처와 그로 인한 합병증 국비 지원

【 감면진료 대상 】

구분	적용 대상자	보훈병원 (약제비 포함)	위탁병원 (비급여 제외·약제비 일부대상 지원)
국비진료 대상이 아닌 국가유공자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면제	▶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약제비 : 1인당 연간 252,000원 한도
	▶ 무공수훈자	▶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약제비 : 1인당 연간 160,000원 한도
	▶ 보국수훈자 ▶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 4·19혁명공로자	▶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해당 없음
독립유공자 유·가족	▶ 독립유공자법 제5조 적용 대상자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	▶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1인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약제비 미지원
국가유공자 유·가족	▶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선순위유족이 부 또는 모인 경우 모두) ※ '12.7.1. 이전 등록 신청자는 유가족 모두	▶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75세 이상 아래 해당자로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1인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령자 (선순위유족이 보상금 구분대상 부 또는 모인 경우 협의 등 1인 지정) * 약제비 미지원
보훈보상 대상자의 배우자	▶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75세 이상 아래 해당자로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의 배우자 - 보상금을 받는 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 약제비 미지원
특수임무 유공자와 유·가족	▶ 특수임무공로자 ▶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선순위유족이 부 또는 모인 경우 모두) ※ '16.6.23. 이전 등록 신청자는 유가족 모두	▶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해당 없음
5·18민주 유공자와 유·가족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선순위유족이 부 또는 모인 경우 모두) ※ '16.6.23. 이전 등록 신청자는 유가족 모두	▶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해당 없음
	▶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 감면	
	▶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선순위유족이 부 또는 모인 경우 모두) ※ '16.6.23. 이전 등록 신청자는 유가족 모두	▶ 본인 부담 진료비의 30% 감면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 본인 부담 진료비의 90% 감면	▶ 본인 부담 진료비의 90% 감면 * 약제비 : 1인당 연간 252,000원 한도
창군자 및 제대군인	▶ 국군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자 ▶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	▶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 감면	▶ 해당 없음 - 단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은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 감면 * 약제비 미지원

*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등의 위탁병원 원외약제비는 '22.10월부터 시행 / '23.10.월부터 연령제한 폐지